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 안 번 호	
------------	--

제안연월일 : 2026. 2.

제 안 자 : 정무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24년 10월 7일 조승래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2025. 2. 18.)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나. 2025년 12월 5일 강준현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근거하여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를 거쳐 바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다.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5. 12. 15.)에서는 위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라.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2025. 12. 17.)는 법안심

사제1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와 관련하여 가상자산 형태로 피해자금을 편취하거나 현금 형태의 피해자금을 도피시키는 수단으로 가상자산을 악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대상은 금융회사로 한정되어 있고 가상자산사업자를 포함하고 있지 않아, 가상자산이 연루된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하여는 범죄의 예방 및 피해구제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가상자산시장을 개설·운영하는 가상자산사업자를 현행법 적용대상에 포함시키고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한 피해금 등 자산의 범위를 가상자산까지 확대시킴으로써 가상자산을 이용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에 대한 대응력과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법 적용대상에 가상자산거래소 추가(안 제2조제1호파목 신설 등)

현행법의 적용대상을 기존 금융회사 외에 ‘가상자산거래소(「가상

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가상자산사업자로서 같은 조 제4호의 가상자산시장을 개설·운영하는 자)’까지 확대함.

나.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위에 가상자산을 이용한 행위 추가(안 제2조제2호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위를 기존 금전을 이용한 행위 외에 가상자산을 이용한 행위까지 확대함.

다. 피해자산 및 피해환급자산의 범위에 가상자산 추가(안 제2조제5호 및 제6호 등)

피해자산 및 피해환급자산의 범위에 금전뿐만 아니라 가상자산을 추가함으로써 가상자산 형태의 피해자산에 대하여도 지급정지·채권소멸절차 등을 통한 피해 보전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함.

라. 피해자 환급대상 가상자산의 현금화 지원 근거 마련(안 제10조 제4항 신설)

피해자에게 환급되는 자산이 가상자산 형태이고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가상자산거래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해당 가상자산을 매도하여 현금화한 후 해당 매도대금을 피해자에게 환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1조 중 “금융회사”를 “금융회사등”으로, “피해금 환급”을 “피해자산 환급”으로, “사기이용계좌”를 “사기이용계좌등”으로, “피해금환급절차”를 “피해자산환급절차”로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금융회사”란”을 ““금융회사등”이란”으로 하고, 같은 호에 하목 및 거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호가목 중 “하는”을 “하거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상자산(이하 “가상자산”이라 한다)을 이전하도록 하는”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이체하는”을 “이체하거나 가상자산을 이전하는”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자금”을 “자금 또는 가상자산이 저장된 수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의2 중

““전자금융거래”란 금융회사가”를 ““전자금융거래등”이란 금융회사등이”로, “서비스”를 “서비스 또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각 목의 행위를 통한 서비스”로, “금융회사의”를 “금융회사등의”로 하며,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피해금”을 “피해자산”으로, “계좌에서 사기이용계좌로 송금·이체된 금전, 피해자가 교부한 금전”을 “계좌 또는 계정(이하 “계좌등”이라 한다)에서 사기이용계좌등으로 송금·이체·이전된 금전 또는 가상자산, 피해자가 교부한 금전, 피해자가 가상자산이 저장된 수단을 교부한 경우에는 그 가상자산”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피해환급금”을 “피해환급자산”으로, “피해금”을 “피해자산”으로, “금융회사가”를 “금융회사등이”로, “금전”을 “금전 또는 가상자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금융회사와”를 “금융회사등과”로, “전자금융거래를”을 “전자금융거래등을”로 한다.

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가상자산시장을 개설·운영하는 같은 조 제2호의 가상자산사업자(이하 “가상자산거래소”라 한다)

거. 그 밖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가상자산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4. “사기이용계좌등”이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좌 또는 계정(가상자산거래소가 가상자산의 거래·보관 등의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가상자산 이용

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이용자에게 부여한 고유식별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가. 피해자의 자금이 송금·이체된 계좌

나. 피해자가 교부하였거나 피해자의 계좌에서 출금된 자금이 입금된 계좌

다. 피해자의 가상자산이 이전된 계정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계좌 또는 계정으로부터 자금 또는 가상자산의 이전에 이용된 계좌 또는 계정

법률 제21320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제2조제8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사기관련의심계좌”란”을 ““사기관련의심계좌등”이란”으로, “계좌로서”를 “계좌등으로서”로, “계좌를”을 “계좌등을”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피해금”을 “피해자산”으로, “출금”을 “출금 또는 이전”으로, “계좌”를 “계좌등”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계좌”를 각각 “계좌등”으로 한다.

제2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피해환급금 지급액 및 사기이용계좌”를 “피해환급자산 지급 금액 또는 가상자산 수량 및 사기이용계좌등”으로, “금융회사나”를 “금융회사등이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금융회사”를 “금융회사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금융회사가 전자금융거래”를 “금융회사등이 전자금융거래등의”로 한다.

제2조의4의 제목 중 “금융회사”를 “금융회사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금융회사는”을 “금융회사등은”으로 하

며, 같은 항 제1호 중 “금융회사”를 “금융회사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금융회사와”를 “금융회사등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금융회사는”을 “금융회사등은”으로 한다.

제2조의5의 제목 중 “이용자계좌”를 “이용자계좌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회사는”을 “금융회사등은”으로, “계좌”를 “계좌등”으로, “송금 또는 출금”을 “송금, 출금 또는 가상자산 이전”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계좌가”를 “계좌등이”로, “의심거래계좌(이하 “피해의심거래계좌”라 한다)로”를 “의심거래계좌또는 계정(이하 “피해의심거래계좌등”이라 한다)으로”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계좌가 피해의심거래계좌로”를 “계좌등이 피해의심거래계좌등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금융회사는”을 “금융회사등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금융회사는”을 “금융회사등은”으로, “계좌가 피해의심거래계좌”를 “계좌등이 피해의심거래계좌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금융회사는”을 “금융회사등은”으로 한다.

제2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금융회사는”을 “금융회사등은”으로, “금융거래”를 “금융거래(「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각 목의 행위에 따른 가상자산의 거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금융회사는”을 “금융회사등은”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계좌”를 “계좌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계좌”를 “계좌등”으로, “출금”을 “출금 또는 가상자산 이전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금융회사는”

을 “금융회사등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금융회사는”을 “금융회사등은”으로, “계좌의”를 “계좌등의”로, “계좌를”을 “계좌등을”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금융회사는”을 “금융회사등은”으로, “계좌”를 “계좌등”으로, “출금”을 “출금 또는 가상자산 이전의”로 한다.

제2조의7제2항제4호 중 “피해금”을 “피해자산”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사기이용계좌의”를 “사기이용계좌등의”로, “사기이용계좌로”를 “사기이용계좌등으로”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사기이용계좌 등의 정보에”를 “사기이용계좌등과 관련한 정보 등에”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피해금”을 “피해자산”으로, “이체한 계좌를”을 “이체 또는 이전한 계좌등을”로,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계좌를”을 “금융회사등 또는 사기이용계좌등”으로, “금융회사에”를 “금융회사등에”로, “사기이용계좌의”를 “사기이용계좌등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기이용계좌를”을 “사기이용계좌등을”로, “금융회사”를 “금융회사등”으로, “사기이용계좌의”를 “사기이용계좌등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피해금”을 “피해자산”으로, “사기이용계좌를”을 “사기이용계좌등을”로, “금융회사”를 “금융회사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금융회사는”을 “금융회사등은”으로, “금융회사의 사기이용계좌로 피해금이”를 “금융회사등의 사기이용계좌등으로 피해자산이”로, “이체된”을 “이체 또는 이전된”으로, “금융회사에”를 “금융회사등에”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피해금”을 “피해자산”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회사는”을 “금융회사등은”으로,

“사기이용계좌로”를 “사기이용계좌등으로”로, “사기이용계좌의”를 “사기이용계좌등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사기이용계좌로”를 “사기이용계좌등으로”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피해의심거래계좌”를 “피해의심거래계좌등”으로, “사기이용계좌로”를 “사기이용계좌등으로”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사기이용계좌”를 “사기이용계좌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금융회사는”을 “금융회사등은”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금융회사”를 “금융회사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사기이용계좌”를 “사기이용계좌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금융회사”를 “금융회사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피해금”을 “피해자산”으로, “이체한 계좌를”을 “이체 또는 이전한 계좌등을”로, “금융회사”를 “금융회사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금융회사는”을 “금융회사등은”으로 한다.

제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사기이용계좌”를 “사기이용계좌등”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금융회사는”을 “금융회사등은”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본문 중 “사기이용계좌”를 “사기이용계좌등”으로, “정하는 금액”을 “정하는 금액(가상자산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수량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로 하며, 같은 호 단서 중 “금융회사”를 “금융회사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사기이용계좌와”를 “사기이용계좌등과”로, “금융회사”를 “금융회사등”으로, “종별 및 계좌

번호”를 “종별, 계좌번호 및 계정정보”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금액”을 “금액 또는 가상자산의 종류 및 수량(이하 “금액등”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전자금융거래제한대상자”를 “전자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사기이용계좌”를 “사기이용계좌등”으로, “금융회사”를 “금융회사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기이용계좌와”를 “사기이용계좌등과”로, “피해금”을 “피해자산”으로, “금융회사”를 “금융회사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회사는”을 “금융회사등은”으로, “피해금”을 “피해자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금융회사”를 “금융회사등”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자금융거래”를 각각 “전자금융거래등의”로, “금융회사”를 “금융회사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계좌가 사기이용계좌가”를 “계좌등이 사기이용계좌등이”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단서 중 “계좌가”를 “계좌등이”로, “사기이용계좌로”를 “사기이용계좌등으로”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계좌가 피해금”을 “계좌등이 피해자산”으로, “이용된 계좌가”를 “이용된 계좌등이”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금융회사는”을 “금융회사등은”으로, “금융회사에”를 “금융회사등에”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금융회사”를 “금융회사등”으로, “사기이용계좌”를 “사기이용계좌등”으로, “전자금융거래”를 “전자금융거래등의”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전자금융거래”

를 “전자금융거래등의”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단서 중 “사기이용계좌에 예치된 금액”을 “사기이용계좌등에 예치된 금액등”으로, “피해금”을 “피해자산”으로, “금액에”를 “금액등으로”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계좌가 사기이용계좌가”를 “계좌등이 사기이용계좌등이”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피해환급금”을 “피해환급자산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회사는”을 “금융회사등은”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의2 중 “사기이용계좌”를 “사기이용계좌등”으로, “금액”을 “금액등”으로, “피해금에”를 “피해자산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금융회사”를 각각 “금융회사등”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금액”을 “금액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중 “금융회사”를 각각 “금융회사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금액”을 “금액등”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중 “피해환급금”을 “피해환급자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피해환급금”을 각각 “피해환급자산”으로, “금액”을 “금액등”으로, “금융회사에”를 “금융회사등에”로, “금융회사는”을 “금융회사등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피해환급금”을 “피해환급자산”으로, “금융회사”를 “금융회사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피해환급금”을 “피해환급자산”으로 한다.

② 제1항의 피해환급자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등으로

한다.

1. 총피해금액등(총 피해자산의 금액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소멸채권 금액등을 초과하는 경우: 소멸채권 금액등에 각 피해자의 피해금액등(피해자산의 금액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총피해금액등에 대한 비율을 곱한 금액등

2. 제1호 외의 경우: 해당 피해금액등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피해환급자산이 가상자산이고 피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가상자산거래소는 해당 가상자산을 매도한 후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금전으로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상자산거래소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게 해당 가상자산의 매도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의 제목 및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피해환급금”을 각각 “피해환급자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피해금의 전액”을 “피해자산의 전부”로 한다.

제11조의2 중 “계좌”를 “계좌등”으로 한다.

제12조 중 “금융회사로부터 피해환급금”을 “금융회사등으로부터 피해환급자산”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환급금”을 “환급자산”으로 한다.

제13조의2의 제목 중 “사기이용계좌”를 “사기이용계좌등”으로, “전자금융거래”를 “전자금융거래등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자금융거래가”를 “전자금융거래등이”로, “전자금융거래제한대상자”를 “전자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계좌와”를 “계좌등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전자금융거래제한대상자”를 “전자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로, “금융회사”를 “금융회사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금융회사는”을 “금융회사등은”으로, “전자금융거래제한대상자의 전자금융거래를”을 “전자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의 전자금융거래등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전자금융거래제한대상자”를 각각 “전자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로, “전자금융거래의”를 “전자금융거래등의”로, “금융회사”를 “금융회사등”으로 한다.

법률 제21320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제13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회사”를 “금융회사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피해발생계좌(피해자의 계좌로서 사기이용계좌로 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계좌를 말한다), 사기이용계좌 및 사기관련의심계좌와 그 계좌”를 “피해발생 계좌등(피해자의 계좌등으로서 사기이용계좌등으로 피해자산을 송금·이체 또는 이전한 계좌등을 말한다), 사기이용계좌등 및 사기관련의심계좌등과 그 계좌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금융회사”를 “금융회사등”으로 한다.

제14조 중 “피해환급금”을 “피해환급자산”으로 한다.

제14조의2제1항 중 “사기이용계좌로”를 “사기이용계좌등으로”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금융회사”를 “금융회사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금융회사”를 “금융회사등”으로, “사기이용계좌와 피해의심거래계좌”를 “사기이용계좌등과 피해의심거래계좌등”으로 한다.

제18조제1항제1호·제2호·제2호의2·제2호의3·제3호·제4호 및 제5호 중 “금융회사”를 각각 “금융회사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피해환급금”을 “피해환급자산”으로, “금융회사”를 “금융회사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전자금융거래를”을 “전자금융거래등을”로, “금융회사”를 “금융회사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금융회사”를 각각 “금융회사등”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상자산에 대한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자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2호 및 제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범한 가상자산에 대한 제2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및 그로 인해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임시조치 등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이용자의 계좌등이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금융거래의 목적 확인 등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6의 개정규정

은 이 법 시행 이후 고객의 계좌등이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계좌등의 지급정지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해당 계좌등이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거짓 피해구제 신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3조제1항 또는 제6조제1항에 따라 피해구제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가목 중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로 한다.

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6조의2제1항 중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부터 파목까지에 따른 기관”으로 한다.

③ 전기통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3제1항제2호 중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3”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3”으로 한다.

제60조의2제1항제2호 중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로 한다.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u> 제1조(목적) 이 법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의 피해 방지 대책 및 <u>금융회사</u> 피해 방지 책임 등을 정하고,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자에 대한 <u>피해금 환급</u> 위하여 <u>사기이용계좌</u> 채권소멸절차와 <u>피해금환급절차</u> 등을 정함으로써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예방하고 피해자의 재산상 피해를 신속하게 회복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u>금융회사</u>”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 파. (생략) <u><신설></u>	<u>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u> 제1조(목적) ----- ----- -----<u>금융회사등</u>----- ----- -----<u>피해자산 환급</u>----- ---<u>사기이용계좌등</u>----- -----<u>피해자산환급절차</u>----- ----- ----- ----- -----. 제2조(정의) ----- -----. 1. “<u>금융회사등</u>”이란----- ----- -----. 가. ~ 파. (현행과 같음) 하. 「<u>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u>」 제2조제

나.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
금을 송금·이체하는 행위

다. 자금을 교부받거나 교부
하도록 하는 행위

라. (생략)

2의2. “전자금융거래”란 금융회
사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
고, 이용자가 금융회사의 종
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
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
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를 말한다.

3. (생략)

4. “사기이용계좌”란 전기통신
금융사기로 인하여 피해자의
자금이 송금·이체된 계좌,
피해자가 교부하였거나 피해

(이하 “가상자산”이라 한
다)을 이전하도록 하는---

나. -----
-----이체하거나 가상
자산을 이전하는-----

다. 자금 또는 가상자산이 저
장된 수단을-----

라. (현행과 같음)

2의2. “전자금융거래등”이란 금
융회사등이-----
-----서비스 또
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각 목의 행위를 통한 서비스-
-----금융회사
등의-----

3. (현행과 같음)

4. “사기이용계좌등”이란 전기
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계좌 또는 계정(가상자산

자의 계좌에서 출금된 자금이
입금된 계좌 및 해당 계좌로
부터 자금의 이전에 이용된
계좌를 말한다.

5. “피해금”이란 전기통신금융
사기로 인하여 피해자의 계좌
에서 사기이용계좌로 송금·
이체된 금전, 피해자가 교부
한 금전 또는 피해자의 계좌
에서 출금된 금전을 말한다.

거래소가 가상자산의 거래·
보관 등의 서비스 제공을 위
하여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의 이용자에게 부여한 고유식
별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
을 말한다.

가. 피해자의 자금이 송금·
이체된 계좌

나. 피해자가 교부하였거나
피해자의 계좌에서 출금된
자금이 입금된 계좌

다. 피해자의 가상자산이 이
전된 계정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계
좌 또는 계정으로부터 자
금 또는 가상자산의 이전
에 이용된 계좌 또는 계정

5. --피해자산-----

계좌 또는 계정(이하 “계좌
등”이라 한다)에서 사기이용
계좌등으로 송금·이체·이전
된 금전 또는 가상자산, 피해
자가 교부한 금전, 피해자가
가상자산이 저장된 수단을 교

	<u>부한 경우에는 그 가상자산</u>----- -----.
6. “<u>피해환급금</u>”이란 <u>피해금</u>을 환급하기 위하여 제9조에 따라 소멸된 채권을 기초로 하여 제10조에 따라 산정되어 <u>금융회사</u>가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u>금전</u>을 말한다.	6. --<u>피해환급자산</u>-----<u>피해 자산</u>----- ----- ----- --<u>금융회사등</u>이----- -----<u>금전 또는 가상자산</u>----- -----.
7. “<u>이용자</u>”란 <u>금융회사</u>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u>전자금융거래</u>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7. -----<u>금융회사등</u>과----- -----<u>전자금융거래등</u>----- -----.
법률 제21320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21320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8. “<u>사기관련의심계좌</u>”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는 <u>계좌</u>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u>계좌</u>를 말한다. 가. <u>피해금</u>의 입금·이체·송금·<u>출금</u>에 이용되는 것으로 의심되는 <u>계좌</u> 나. <u>계좌</u> 명의인에게 피해가	8. “<u>사기관련의심계좌등</u>”이란 - ----- ----- <u>계좌등</u>으로서 ----- ----- <u>계좌등</u>을 -----. 가. <u>피해자산</u>----- -----<u>출금 또는 이전</u>----- ----- <u>계좌등</u> 나. <u>계좌등</u> -----

발생할 것으로 의심되는 <u>계좌</u> 제2조의2(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대응 등) ① (생략) ② 금융위원회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도별 <u>피해환급금 지급액 및 사기이용계좌</u> 발생건수를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u>금융회사나</u> 그 임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요구 또는 명령하거나 그 개선계획을 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u>금융회사</u> 및 임직원에 대한 주의·경고·견책(譴責) 또는 감봉 2. <u>금융회사가 전자금융거래</u>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산인력, 전산시설 및 전자적 장치 등의 개선 또는 보완에 관한 사항 ③ · ④ (생략)	----- <u>계좌등</u> 제2조의2(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대응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u>피해환급자산</u> 지급금액 또는 가상자산 수량 및 <u>사기이용계좌등</u>----- ----- -----<u>금융회사등이</u><u>나</u>----- ----- ----- ----- 1. <u>금융회사등</u>----- ----- ----- 2. <u>금융회사등이 전자금융거래 등의</u>----- ----- ----- ----- ③ · ④ (현행과 같음)
---	--

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제2조의5(이용자계좌에 대한 임시조치) ① 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이용자 계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체, 송금 또는 출금을 지연시키거나 일시 정지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자체점검을 상시적으로 실시하여 이용자의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의심거래계좌(이하 “피해의심거래계좌”라 한다)로 이용되는 것으로 추정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제15조제3항에 따라 이용자의 계좌가 피해의심거래계좌로 추정된다는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② 금융회사는 제1항에 따라 임시조치를 한 경우 지체 없이

-----.

제2조의5(이용자계좌등에 대한 임시조치) ① 금융회사등은-----

-----계좌등-----

--송금, 출금 또는 가상자산 이
전-----

-----.

1. -----

-----계좌등이-----

-----의심거래계좌
또는 계정(이하 “피해의심거래계좌등”이라 한다)으로-----

2. -----
--계좌등이 피해의심거래계좌
등으로-----

② 금융회사등은-----

해당 이용자에게 임시조치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고 본인확인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금융회사는 제2항에 따른 본인확인조치 결과 해당 이용자의 계좌가 피해의심거래계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임시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④ 금융회사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임시조치에 관한 통지·해제 및 본인확인조치를 한 때에는 그 내역을 서면, 녹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제2조의6(금융거래의 목적 확인)

① 금융회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객의 금융거래의 목적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이를 위한 업무지침을 작성하고 운용하여야 한다.

-----.

③ 금융회사등은-----

-----계좌등이 피해의심거래계좌등-----

-----.

④ 금융회사등은-----

-----.

제2조의6(금융거래의 목적 확인)

① 금융회사등은-----

-----금융거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각 목의 행위에 따른 가상자산의 거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금융회사등은-----

	-----.
1. 고객이 <u>계좌</u> 의 개설을 신청하는 경우	1. ----- <u>계좌등</u> -----

2. 고객이 제4항에 따른 <u>계좌</u> 의 이체·송금· <u>출금</u> <u>한도</u> 제한을 해제하려는 경우	2. ----- <u>계좌등</u> -----
	----- <u>출금 또는 가상자산 이전의 한도</u> -----

3. (생략)	3. (현행과 같음)
② <u>금융회사</u> 는 제1항에 따른 확인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객에게 관련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u>금융회사등</u> 은-----

	-----.
③ <u>금융회사</u> 는 제1항에 따른 확인을 한 결과 금융거래의 목적이 전기통신금융사기와 관련되어 있거나 고객이 신원확인등을 위한 정보제공을 거부하여 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u>계좌</u> 의 개설을 거절하거나 기존 <u>계좌</u> 를 해지할 수 있다.	③ <u>금융회사등</u> 은-----

	----- <u>계좌등의</u> -----
	----- <u>계좌등을</u> -----
	-----.
④ <u>금융회사</u> 는 고객이 제2항에	④ <u>금융회사등</u> 은-----

따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증빙서류가 금융거래의 목적을 확인하는데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좌의 이체·송금·출금 한도를 제한할 수 있다.

- 제2조의7(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 신고대응센터의 설치 등) ① (생략)
-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 3. (생략)
 4. 전기통신금융사기에 관한 피해금 환급의 상담
 5.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요청 및 사기이용계좌로 의심되는 경우의 정보제공
 6. (생략)
 7.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사기이용계좌 등의 정보에 대한 데이터 분석과 관계 행정기관 및 관련 기관·법인·단체로의 정보 전파

계좌등-----출금 또는
가상자산 이전의-----
--.

- 제2조의7(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 신고대응센터의 설치 등) ① (현행과 같음)
- ② -----
-----.
1. ~ 3. (현행과 같음)
 4. -----피해자산-----
 5. -----
사기이용계좌등의-----
-----사기이용계좌등으로-----

 6. (현행과 같음)
 7. -----
-----사기이용계좌등과
관련한 정보 등에-----

8. (생 략)

③ · ④ (생 략)

제3조(피해구제의 신청 등) ① 제2조제2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수사기관은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제2조제2호다목 또는 라목에 해당하는 행위와 관련된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수사기관은 제2항에 따른 지급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요청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 이내에 피해자 및 피해금을 특정하여 해당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8. (현행과 같음)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3조(피해구제의 신청 등) ① --

-----피해자
자산-----이체 또는 이전한 계
좌등을-----금융회사등
또는 사기이용계좌등을-----
---금융회사등에-----사기
이용계좌등의-----

-----.

② -----사기이용계좌등
을-----금융회사등-----

-----사기
이용계좌등의-----
-----.

③ -----

-----피해
자산-----사기이용
계좌등을-----금융회사등
-----.

④ 제1항에 따른 피해구제의 신청 및 제2항에 따른 지급정지의 요청을 받은 금융회사는 다른 금융회사의 사기이용계좌로 피해금이 송금·이체된 경우 해당 금융회사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급정지를 요청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피해구제의 신청,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지급정지의 요청 및 피해자·피해금의 통지에 관한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지급정지) ① 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거래내역 등의 확인을 통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사기이용계좌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즉시 해당 사기이용계좌의 전부에 대하여 지급정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생략)
2. 수사기관 또는 「금융위원회

④ -----

-----금융회사등은-----
-----금융회사등의 사기이용계좌등으로 피해자산이-----이
체 또는 이전된-----금
용회사등에-----

-----.

⑤ -----

-----피해자산-----

-----.

제4조(지급정지) ① 금융회사등은

-----사기이용계좌등으로-----

-----사기이용계좌등의-----

-----.

1. (현행과 같음)
2. -----

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 등으로부터 사기이용계좌로 의심된다는 정보제공이 있는 경우

3. 제2조의5제2항에 따른 피해 의심거래계좌에 대한 본인확인조치 결과 사기이용계좌로 추정되는 경우

4. 제15조제3항에 따라 사기이용계좌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5. (생략)

② 금융회사는 제1항에 따라 지급정지 조치를 한 경우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해당 지급정지 조치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명의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지급정지 조치에 관한 사실을 공시하여야 하며, 제3호에 따른 피해자에게는 제3조제3항 또는 제6조제2항에 따른 수사기관의 통지

-----사기이용계좌등으로-----

3. -----피해 의심거래계좌등-----
-----사기이용계좌등으로-----

4. -----사기이용계좌등-----

5. (현행과 같음)

② 금융회사등은-----

-----금융회사등-----

가 있는 때에 통지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라 지급정지된 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이하 “명의인”이라 한다)

2. (생략)

3. 제3조제3항 또는 제6조제2항에 따라 금융회사에 통지된 피해자

4. 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5.·6. (생략)

③ 금융회사는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하여 지급정지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④ (생략)

제4조의2(지급정지 이후 압류 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제4조에 따라 지급정지가 된 사기이용계좌의 채권 전부 또는 일부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제8조에 따라 지급

-----.

1. -----사기이용계좌등-----

2. (현행과 같음)

3. -----금융회사등-----

4. 피해자산-----이체 또는 이전한 계좌등을-----금융회사등

5.·6. (현행과 같음)

③ 금융회사등은-----

④ (현행과 같음)

제4조의2(지급정지 이후 압류 금지 등) ① -----사기이용계좌등-----

정지가 종료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4. (생략)

② (생략)

제5조(채권소멸절차의 개시 공고)

① 금융회사는 제4조에 따라 지급정지 조치를 행한 경우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명의인의 채권이 소멸되는 절차(이하 “채권소멸절차”라 한다)를 개시하기 위한 공고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명의인의 채권 전부 또는 일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제3조제2항에 따른 지급정지 요청에 따라 지급정지 조치를 행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통지가 있는 때에 공고를 요청하여야 한다.

1. ~ 5. (생략)

6. 제4조에 따라 지급정지가 이루어진 사기이용계좌의 잔액이 3만원 이하의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

-----.

1. ~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채권소멸절차의 개시 공고)

① 금융회사등은-----

-----.

1. ~ 5. (현행과 같음)

6. -----

-----사기이용계좌등-----

하인 경우. 다만, 피해자가 지급정지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금융회사에 채권 소멸절차의 개시를 요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금융감독원은 제1항에 따라 채권소멸절차 개시의 공고 요청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생략)
2. 사기이용계좌와 관련된 금융회사, 점포 및 예금 등의 종별 및 계좌번호
3. (생략)
4. 공고 전 피해구제 신청에 따라 채권소멸대상에 해당하는 채권의 금액

----정하는 금액(가상자산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수량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금융회사등-----

② -----

-----.

1. (현행과 같음)
2. 사기이용계좌등과-----금융회사등-----
-종별, 계좌번호 및 계정정보-
3. (현행과 같음)
4. -----

-----금액 또는 가상자산의 종류 및 수량(이하 “금액등”이라 한다)

5.·6. (생 략)

7.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자
금융거래제한대상자로 지정되
었다는 취지와 이의제기 방법
및 절차

8. (생 략)

③ (생 략)

제6조(채권소멸절차 개시 이후의
피해구제) ① 제5조제2항에 따
라 채권소멸절차 개시의 공고
가 이루어진 사기이용계좌의
피해자로서 채권소멸절차 개시
의 공고 전에 피해구제를 신청
하지 아니한 자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제5조제2항에 따른 공
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피해구
제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수사기관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채권소멸절차 개시의 공
고가 이루어진 사기이용계좌와
관련한 추가 피해자와 피해금
을 제5조제2항에 따른 공고일
부터 2개월 이내에 금융회사에
통지할 수 있다.

③ 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금

5.·6. (현행과 같음)

7. -----전자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8.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6조(채권소멸절차 개시 이후의
피해구제) ① -----

-----사기이용계좌등-----

-----금융회사등-----

-----.

② -----

-----사기이용계좌등과
-----피해자
산-----
-----금융회사등-----
-----.

③ 금융회사등은-----

금융감독원에 해당 피해금에 대한 채권소멸절차의 개시 공고를 요청하여야 한다.

1. 2. (생략)

④ (생략)

⑤ 금융회사 및 금융감독원은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 전에 피해구제의 신청을 하지 아니한 피해자가 제1항에 따라 피해구제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7조(지급정지 등에 대한 이의 제기) ① 명의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또는 제13조의2제3항에 따른 전자금융거래 제한이 이루어진 날부터 제5조제2항에 따른 공고일을 기준으로 2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금융회사에 지급정지, 전자금융거래 제한 및 채권소멸절차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1. 해당 계좌가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명하는 경

-----피해자산-----

1. 2.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⑤ 금융회사등-----

제7조(지급정지 등에 대한 이의 제기) ① -----

---전자금융거래등의-----

-----금융회사
등-----전자금융거래
등의-----

1. -----계좌등이 사기이용계좌
등이-----

통지된 피해자를 포함한다. 이
하 같다) 및 금융감독원에 통
지하여야 한다.

③ (생 략)

제8조(지급정지 등의 종료) ① 금
융회사 및 금융감독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기이용계좌의 전부 또
는 일부에 대하여 이 법에 따
른 지급정지·채권소멸절차 및
명의인에 대한 전자금융거래
제한을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13조의2제1항제1호
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전자금융거래 제한을
종료하지 아니 한다.

1. 1의2. (생 략)

2. 제7조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
가 있는 경우. 다만,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
는 경우에는 해당 사기이용계
좌에 예치된 금액 중 전기통
신금융사기 피해금을 제외한
금액에 한정한다.

3. 금융감독원 또는 수사기관이
해당 계좌가 사기이용계좌가

등에-----

-----.

③ (현행과 같음)

제8조(지급정지 등의 종료) ① 금
융회사등-----

-----사기이용계좌등-----

-----전자금융거래
등의-----.

1. 1의2. (현행과 같음)

2. -----
-----.

-----사기이용계
좌등에 예치된 금액등-----
-----피해자산-----
-----금액등으로-----.

3. -----
-----계좌등이 사기이용계좌

아니라고 인정하는 경우

4. 피해환급금 지급이 종료된
경우

5. (생략)

② 금융회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급정지
를 해제하지 아니한다.

1. (생략)

1의2.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소송이 법원에 계속 중인 경
우(해당 사기이용계좌에 예치
된 금액 중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에 한정한다)

2. (생략)

③ 금융회사 또는 금융감독원
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
급정지 및 채권소멸절차를 종
료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명
의인과 피해구제 신청을 한 피
해자 및 관련 금융회사에 통지
하여야 한다.

제9조(채권의 소멸) ① 명의인의
채권(제5조제2항 및 제6조제4
항에 따른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가 이루어진 금액에 한한

등이-----

4. 피해환급자산의-----

5. (현행과 같음)

② 금융회사등은-----

-----.

1. (현행과 같음)

1의2. -----

-----사기이용계좌등-----
--금액등-----
--피해자산으로-----

2. (현행과 같음)

③ 금융회사등-----

-----금융회사등-----
-----.

제9조(채권의 소멸) ① -----

-----금액등-----

다)은 제5조제2항에 따른 최초의 채권소멸절차 개시의 공고일부터 2개월이 경과하면 소멸한다.

② 금융감독원은 제1항에 따라 명의인의 채권이 소멸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명의인, 제3조 및 제6조에 따라 피해구제를 신청한 피해자 및 관련 금융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명의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및 해당 금융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해당 사실을 공시하여야 한다.

1. (생략)
2. 소멸되는 채권의 금액
3. (생략)

제10조(피해환급금의 결정·지급)

① 금융감독원은 제9조제1항에 따라 채권이 소멸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피해환급금을 지급받을 자 및 그 금액을 결정하여 그 내역을 제3조제1항 및 제6조제1항에 따라 피해구제를 신청한 피해자 및 금융회사에

-.

② -----

-----금융회사등-----
-----.

-----금융회사등-----

-----.

1. (현행과 같음)
2. -----금액등
3. (현행과 같음)

제10조(피해환급자산의 결정·지급) ① -----

-----피해환급자산-----
-----금액등-----

-----금융회사-----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를 받은
금융회사는 지체 없이 피해환
급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피해환급금은 총피
해금액이 소멸채권 금액을 초
과하는 경우 소멸채권 금액에
각 피해자의 피해금액의 총피
해금액에 대한 비율을 곱한 금
액으로 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해당 피해금액으로 한다.

③ 금융감독원은 제2항에 따른
피해환급금의 결정을 위하여
금융회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
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 설>

등에-----
-----금융회사등은-----
-피해환급자산-----
-----.

② 제1항의 피해환급자산은 다
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등으로 한다.

1. 총피해금액등(총 피해자산의
금액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소멸채권 금액등을 초과하는
경우: 소멸채권 금액등에 각 피
해자의 피해금액등(피해자산의
금액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총피해금액등에 대한 비율을
곱한 금액등

2. 제1호 외의 경우: 해당 피해
금액등

③ -----
-피해환급자산-----
금융회사등-----
-----.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피
해환급자산이 가상자산이고 피
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가상
자산거래소는 해당 가상자산을

④ 그 밖에 <u>피해환급금</u>의 결정 및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u>피해환급금</u>을 지급받을 수 없는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u>피해환급금</u>을 지급받을 수 없다. 1. 해당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한 <u>피해금의 전액</u> 배상이 이루어진 경우의 피해자 및 그 승계인 2. ~ 4. (생략) 제11조의2(거짓 피해구제 신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거짓으로 제3조제1항 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피해구제를 신청한 자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지급정지된 <u>계좌</u>의 명의인이 그 피해구제 신청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u>매도한 후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금전으로 지급할 수 있다.</u> <u>이 경우 가상자산거래소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게 해당 가상자산의 매도를 요청할 수 있다.</u> ⑤ -----<u>피해환급자산</u>----- ----- -----. 제11조(<u>피해환급자산</u>을 지급받을 수 없는 자) ----- -----<u>피해환급자산</u>-----. 1. ----- ---<u>피해자산의 전부</u>----- ----- ----- 2. ~ 4. (현행과 같음) 제11조의2(거짓 피해구제 신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 ----- ----- ----- ---<u>계좌등</u>----- -----
---	--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제12조(손해배상청구권과의 관계)
피해자가 이 법에 따라 금융회
사로부터 피해환급금을 지급받
은 경우 해당 전기통신금융사
기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
및 그 밖의 청구권은 환급을
받은 한도에서 소멸된다.

제13조(소멸채권 환급 청구) ①
(생략)
② 금융감독원은 제1항에 따른
환급금 지급을 위하여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3조의2(사기이용계좌의 명의
인에 대한 전자금융거래 제한)
① 금융감독원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지급정지 조치에 관한 사
항을 통지받거나 제4조제1항에
따라 지급정지 조치를 받은 적
이 있는 명의인이 다음 각 호
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한 경
우 해당 명의인을 전자금융거
래가 제한되는 자(이하 이 조

-----.

제12조(손해배상청구권과의 관계)
-----금융회
사등으로부터 피해환급자산---

-----.

제13조(소멸채권 환급 청구) ①
(현행과 같음)
② -----
-환급자산-----

--.

제13조의2(사기이용계좌등의 명
의인에 대한 전자금융거래등의
제한) ① -----

-----전자
금융거래등이-----

에서 “전자금융거래제한대상자”라 한다)로 지정하여야 한다.

1. (생략)

2.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제5호에 해당(전기통신 금융사기와 관련된 경우에 한정한다)하면서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한 자로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징역형(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을 선고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3. (생략)

② 금융감독원은 제1항에 따라 명의인을 전자금융거래제한대상자로 지정한 경우 지체 없이 금융회사 및 명의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명의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제5조제2항에 따른 공고로 명의인에 대한 통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③ 금융회사는 제2항에 따라 통지받은 전자금융거래제한대

-----전자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

1. (현행과 같음)

2. -----

3. (현행과 같음)

② -----
-----전자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금융회사등-----
-----.

-----.

③ 금융회사등은-----
-----전자금융거래등제한

보를 제공받아 분석하여 공유하는 기관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을 말한다. 이하 “정보공유분석기관”이라 한다)에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할 수 있다.

1. 피해발생계좌(피해자의 계좌로서 사기이용계좌로 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계좌를 말한다), 사기이용계좌 및 사기관련의심계좌와 그 계좌의 거래내역 및 명의인에 관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2. ~ 4. (생략)

② (생략)

③ 정보공유분석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기정보제공기관으로부터 제공받거나 자신이 분석·생성한 정보로서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예방 및 피해확산 방지에 필요한 정보를 금융회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사기정보이용기관”이라 한다)에게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

-----.

1. 피해발생 계좌등(피해자의 계좌등으로서 사기이용계좌등으로 피해자산을 송금·이체 또는 이전한 계좌등을 말한다), 사기이용계좌등 및 사기관련의심계좌등과 그 계좌등-

2. ~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 금융
회사등-----

할 수 있다.

④ ~ ⑧ (생략)

제14조(수수료) 금융감독원장은
피해환급금을 지급받은 피해자
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제14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 금
융위원회는 전기통신금융사기
의 사기이용계좌로 의심할 만
한 사정을 수사기관 또는 금융
감독원 등에 신고한 자에게 금
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금융감
독원의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
금을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② (생략)

제15조(계좌자료 제공 등에 대한
특례) ① 금융회사 및 금융감
독원은 제3조제4항, 제4조제2
항, 제5조제1항·제2항, 제6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7조제2
항, 제8조제3항, 제9조제2항, 제
10조제3항 및 제13조의2제2항
· 제3항, 제16조에 따라 필요한
자료를 「금융실명거래 및 비
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

④ ~ ⑧ (현행과 같음)

제14조(수수료) -----
피해환급자산-----

-----.

제14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 ---

-사기이용계좌등으로-----

-----.

② (현행과 같음)

제15조(계좌자료 제공 등에 대한
특례) ① 금융회사등-----

도 불구하고 요청·제공하거나
공고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금융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3조 및 「전자금융거래법」 제26조에도 불구하고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사기이용계좌와 피해 의심거래계좌에 관한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로 공유하여야 한다.

제1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조의2제2항에 따른 개선 계획을 제출·이행하지 아니한 금융회사
2. 제2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본인확인조치를 하지 아니한 금융회사

② (현행과 같음)

③ 금융회사등-----

-----사기이용계좌등과 피해
의심거래계좌등-----

제18조(과태료) ① -----

1. -----

금융회사등
2. -----

금융회사등

2의2. 제2조의5제4항을 위반하여 임시조치에 관한 통지·해제 또는 본인확인조치의 내역을 서면, 녹취 등의 방법으로 보존하지 아니한 금융회사

2의3. 제2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고객의 금융거래의 목적을 확인하지 아니한 금융회사

3.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하여 지급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금융회사

4. 제5조제1항 또는 제6조제3항을 위반하여 채권소멸절차의 개시에 관한 공고 요청을 하지 아니한 금융회사

5.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지급정지 및 채권소멸절차를 종료하지 아니한 금융회사

6.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피해환급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금융회사

7. 제13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전자금융거래를 처리한 금융회사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2의2. -----

-----금융회사등

2의3. -----

-----금융회사등

3. -----

-----금융회사등

4. -----

-----금융회사등

5. -----

-----금융회사등

6. -----피

해환급자산-----

-----금융회사등

7. -----

전자금융거래등-----금

융회사등

② -----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조제4항을 위반하여 지급 정지 요청을 하지 아니한 <u>금융회사</u> 2.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위반하여 해당 지급정지 조치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지 아니한 <u>금융회사</u> 3.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명의인의 이의제기를 피해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u>금융회사</u> ③ (생략)	----- -----. 1. ----- -----<u>금융회사등</u> 2. ----- ----- -----<u>금융회사등</u> 3. ----- ----- -----<u>금융회사등</u> ③ (현행과 같음)
--	--